

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5-08호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제) 채용 공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제)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2025년도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인턴제)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제) 채용

1. 공모직위

-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인턴제) 10명

2. 계약기간

- 약 6개월(2025. 07. 01. ~ 2025. 12. 31.)

3. 채용분야

- 신용보증, 채권관리,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 컨설팅 등 업무 보조
※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4. 근무지

- 본 · 지점 및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울산광역시 내)

5. 자격요건

가. 학력 · 전공 · 성별 · 신체조건 제한 없으나, 지역인재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공고일 기준 청년(19세~34세)인 자

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은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다. 재단 「인사규정」제14조 제1항(채용제한)에 전부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별지1]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참고

6.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점 부여

※ [별지2]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기준 참고

7. 근로조건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매월 2,470,000원 (중식대 및 교통비 포함)	4대 보험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 : 9시 ~ 18시)

8.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전 형	실시일자	평가기준	선발배수	합격자 발표일자
서류전형 (온라인)	'25. 5. 27(화) ~ 6. 2(월) (14시 까지)	결격사유 여부 판단	-	'25. 6. 4(수) 17시 이후
면접전형 (오프라인)	'25. 6. 11(수) 14시 예정	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10명 (선발 배수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정)	'25. 6. 13(금) 17시 이후
		신원조회 이상 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		'25. 6. 20(금) 17시 이후

9. 전형별 채용일정

구 분	세 부 일 정
공고기간	2025. 5. 13.(화) ~ 2025. 6. 2.(월)
접수일자	2025. 5. 27.(화) ~ 2025. 6. 2.(월), 14:00까지
서류전형	2025. 6. 4.(수) 한
서류전형 발표	2025. 6. 4.(수), 17시
면접일자	2025. 6. 11.(수), 14시
신원조회 확인	2025. 6. 19.(목) 한
합격자 발표	2025. 6. 20.(금), 17시
출근일자	2025. 7. 1.(화)

* 세부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접수방법

- 재단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ulsanshinbo)를 통한 온라인 접수

11. 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마감일 : 2025.06.02.)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하여 사본 제출

제출서류 목록	비고	유효기간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
2.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지역인재 확인서류	3개월 이내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자격요건확인용)	공통	-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6.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7. 가족관계증명서(결격사유 확인용)	최종합격자 제출	3개월 이내
8. 국가건강검진 결과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12.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 나. 최종합격자 발표 시 최종합격 예비합격자 규모는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여 순번을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로 입사 기회 부여

13.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항목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전문분야지식 및 논리성”, “직무수행능력”, “적극적태도”, “상대방 의견 경청”, “고객중심사고”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

14.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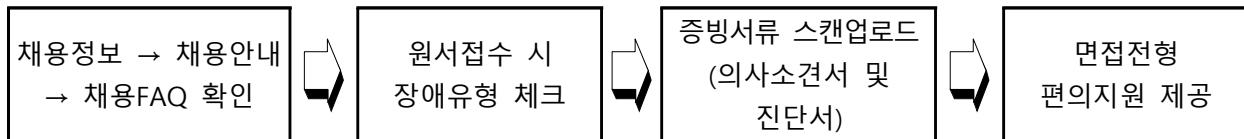
- 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
- 나.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탈락’ 처리 후, 민·형사상 조치 예정
- 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학력 등 작성 금지

15.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

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 제공범위 : 면접전형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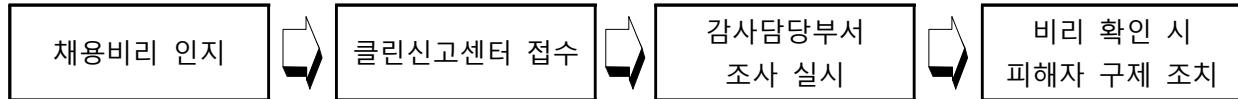


나. 이의 제기 절차

■ 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

■ 처리절차



■ 피해자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 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 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단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16.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당 재단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중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미준수자는 보완 요청없이 탈락 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
- 라.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마. 전형별 결과는 기재한 휴대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문자발송 등) 예정
- 바. 기타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본부(담당자 추화랑 차장, 052-283-8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 가.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함.
-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재단이 부담
- 라.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해당 채용 연도의 마지막일로부터 5년간 보존예정

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

별지1**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자격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지역인재 (세부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공고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

○ 결격사유

구 분	세 부 내 용
재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별지2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 기준

구 분	만점의 10퍼센트	만점의 5퍼센트
독립유공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국가유공자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진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가. 좌측 '가'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사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나.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가. 좌측 '가'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가.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나.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가. 좌측 '가'호 대상자의 배우자 나.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가.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가. 좌측 '가'호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나.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